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안철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0.

발 의 자 : 안철수 · 김대식 · 박정하
김선교 · 김태호 · 김 건
김예지 · 나경원 · 김장겸
박성훈 · 이종욱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·경영상의 정보에 대해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최근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을 통해 기술·경영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, 원본증명제도의 범위에 아이디어는 여전히 제외되어있음. 그로 인해 기술 분쟁시 증거 활용을 위한 기술임치 활성화 및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기존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술임치 활성화를

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 등).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의 제목 중 “영업비밀 원본”을 “원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”을 “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아이디어나 영업비밀”로, “영업비밀 원본 증명기관”을 “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영업비밀”을 “아이디어 및 영업비밀”로, “영업비밀”을 “아이디어 또는 영업비밀”로 한다.

제9조의3제1항 중 “영업비밀이 포함된”을 “아이디어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”으로, “영업비밀”을 “아이디어 및 영업비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“영업비밀”을 “아이디어 또는 영업비밀”로 한다.

제9조의8의 제목 중 “영업비밀”을 “아이디어 및 영업비밀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영업비밀”을 “아이디어나 영업비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2(<u>영업비밀 원본 증명</u>) ① <u>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</u>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 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 에 따른 <u>영업비밀 원본증명기</u> <u>관</u> 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 된 고유의 식별값[이하 “전자 지문”(電子指紋)이라 한다]을 등록할 수 있다.	제9조의2(<u>원본 증명</u>) ① <u>경제적</u> <u>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또는</u> <u>영업비밀 보유자는 아이디어나</u> <u>영업비밀</u> ----- ----- ----- <u>아이디어 및</u> <u>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제9조의3에 따른 <u>영업비밀</u>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<u>영업비밀</u>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 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(이하 “원본증 명서”라 한다)를 발급할 수 있 다.	② ----- <u>아이디어</u> <u>및 영업비밀</u> ----- ----- <u>아이디어</u> <u>또는 영업비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 략) 제9조의3(원본증명기관의 지정	③ (현행과 같음) 제9조의3(원본증명기관의 지정

등)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(이하 “원본증명업무”라 한다)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(이하 “원본증명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 증명서의 발급

3·4. (생략)

⑤ (생략)

제9조의8(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)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·멸실·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등) ① -----
-----아이디어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-----

-----아이디어 및 영업비밀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아이디어 또는 영업비밀-----

3·4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8(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) -----

-----아이디어나 영업비밀-----

